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49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이주희 · 용혜인 · 손 솔
오세희 · 박정현 · 김한규
정혜경 · 양문석 · 정태호
이광희 · 문진석 · 김남근
김 윤 · 정진욱 · 전종덕
김동아 · 최민희 · 진성준
장종태 · 박지원 · 박해철
송재봉 · 민병덕 · 곽상언
임미애 · 박용갑 · 김우영
이정현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 · 음성 · 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 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7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이하 “표시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4항에 따른 광고성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 표시등의 지원 및 훼손·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표시등의 방법, 제6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에 제11호의3부터 제1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50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4. 제5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등을 훼손·위조·변조한 자

11의5. 제50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누구든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이하 “표시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u> <u>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u>
<u><신 설></u>	

<신 설>

<신 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의2. (생략)

<신 설>

<신 설>

서는 아니 된다.

⑥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4항에 따른 광고성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 표시등의 지원 및 훼손·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표시등의 방법, 제6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

1. ~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제50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4. 제50조의7제5항을 위반

<u><신 설></u> 12. (생 략) ② ~ ④ (생 략)	<u>하여 표시등을 훼손·위조·</u> <u>변조한 자</u> <u>11의5. 제50조의7제6항을 위반</u> <u>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u> <u>하지 아니한 자</u>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